

국민성장펀드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

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'26.4.15.(수)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*을 의결 하였다.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조세특례제한법, 농어촌특별세법, 국세기본법

조세특례제한법

-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
-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은누리상품권 추가

농어촌특별세법

-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국세기본법

-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·도산우려 등 명시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- 금융세제(4232, 4234), 법인세제(4221, 4226), 국세기본법(4151, 4154)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진규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	이원준 (wonjun220@korea.kr)

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(조특법 §136㉔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</p> <p>○ 아래 각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* 20%까지 추가손금</p> <p>* 기본한도 + 수입금액별 한도</p> <p>① 문화비 지출분</p> <p>②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전통시장·지역사랑상품권· 온누리상품권 지출분</p>

〈개정이유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

〈적용시기〉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농어촌특별세법

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
비과세(농특법 §4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특별세* 비과세 대상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저축 상품</p> <p>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%</p> <p>○ 비과세 종합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</p>

<개정이유>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국세기본법

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·도산우려 등 명시(국기법 §81의7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재지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 밖에 ①~④에 해당하는 사유 (시행령 규정) ①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 ② 납세자의 질병, 장기출장 등 ③ 장부·증거서류 등이 압수된 경우 ④ 기타 ①~③에 준하는 사유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기사유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·재산·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 발생 ○ 사업의 현저한 손실발생 또는 부도·도산 우려 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익 보호